

1. 제정이유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 제정(대통령령 제31089호, 10. 7.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원리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검 상호협력의 구체적인 방식 등 절차 규정 마련

- 1) 사법경찰관리는 검사가 협력에 필요한 요구·요청·신청 등을 한 경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안 제4항제1호)
- 2) 경·검 협력요구 등을 할 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이용하도록 방식을 규정하고, 이와 같은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 3) 구체적 협력사항으로 ① 시효임박 사건, 내란, 외환, 선거 등 중요사건의 경우 상호 의견 제시·교환을 위해 필요한 의견서 등 서식(안 제5조), ② 소재불명자 발견 및 소재수사 협력 시 통보서 등 서식 규정(안 제6조)
- 4) 사건담당 사법경찰관리·검사의 상호협의, 사법경찰관리 소속 관서장과 검사 소속 검찰청의 장 간의 협의 절차와 서식 규정(안 제8조)

나. 경찰 내사·수사에 대한 내부 절차 구체화

- 1) 수사의 공정성 제고 및 국민권익 담보를 위해 경찰관이 수사를 회피 신청할 경우의 절차와 서식을 규정(안 제11조)
- 2) 적법절차 준수와 강제수사의 통제력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운용 중이던 심사관 제도를 명문화(안 제15조)
- 3) 내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소속된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하도록 하는 등 내사 사건의 착수 절차 및 처리 유형을 규정하여 통제 강화(안 제17조)
- 4) 심야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심야조사의 내용과 필요한 사유를 청문감사관 등 각 경찰관서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구체화(안 제34조)
- 5) 장시간 조사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요청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하여 자의적인 수사를 막기 위한 절차 구체화 (안 제35조)

다. 수사의 개시에 관한 절차 규정

- 1)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혐의를 인식하였을 때 수사를 개시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입건하도록 규정(안 제16조)
- 2) 진정한·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고소·고발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가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에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9조)
- 3)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을 수리하였을 때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추가 진술이 필요한 경우 고소·고발인으로부터 보충서면을 제출받거나 추가로 진술을 듣도록 규정(안 제20조)

- 4) 고소·고발의 취소가 있는 경우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 희망의사표시의 철회가 있는 경우 그 취지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규정(안 제23호)
- 5) 검시·검증 종료 시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변사체에 대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에 사체 인도를 하도록 규정(안 제29조)

라. 시정조치요구에 따른 이행 절차를 구체화

- 1) 등본을 송부하는 때에는 해당 사건기록 전체를 등본하여 송부하되 등본송부 요구의 사유가 사건기록의 일부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사전에 검사와 합의하여 해당부분에 한해 등본하여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7조제2항)
- 2) 시정조치요구 이행결과 통보의 절차를 정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77조제3항)

마. 수사의 경합시 처리 절차 규정

- 1) 수사준칙 제48조에 따른 사건기록 열람을 하는 경우의 절차와 서식을 규정(안 제80조제1항)
- 2) 검사로부터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은 경우 요청 서면을 검토하여 열람 허용 여부 및 범위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규정(안 제80조제2항)
- 3) 검사에게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 사건기록의 범위를 규정(안 제80조제3항)
- 4) 검사가 기록을 열람한 경우 사건기록담당직원이 관리대장에 열람 일시, 열람 검사의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절차를 규정(안 제80조제5항)

바.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이행 절차를 구체화

- 1)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 통보의 절차를 정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108조제1항)
- 2) 영장신청사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한 경우 그 처리 절차를 기존 영장신청을 유지하는 경우와 철회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안 제108조제3항)
- 3) 보완수사한 결과 기존 송치결정을 변경하여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는 경우,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하도록 규정(안 제108조제4항)

사. 수사 중지 사건의 처리 및 이의제기 절차를 구체화

- 1) 수사 중지 결정의 종류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01조)
- 2) 소재불명 사유로 수사중지를 하는 경우 매 분기 1회 이상 소재수사하는 등 수사중지 사유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하도록 규정(안 제102조, 제103조)
- 3) 수사준칙 제54조제1항에서 위임받은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의 접수방법 및 처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04조)
- 4) 수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수사 재개 절차에 관해 규정(안 제105조)

아. 범죄피해자 보호

- 1) 신변보호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변보호의 유형을 구체화(안 제82조)
- 2)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등을 규정(안 제83조)

- 3) 회복적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4조)

자. 소년·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

소년 피의자 체포·구속 시 다른 사건보다 우선 조사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칙을 제정하여 형사절차상 권리보장(안 제92조, 제93조, 제94조)

차. 불송치 결정의 종류와 사유를 세분화하여 규정

- 1)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 불송치 결정의 종류를 정하고 각 결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11조제1항)
- 2) 불송치 결정 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물 처분을 완료하도록 규정(안 제111조제2항)

카. 재수사 결과의 처리 절차

- 1) 재수사 후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기존 불송치 결정을 취소하도록 규정(안 제115조제1항)
- 2) 수사준칙 제64조제2항단서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하도록 규정(안 제115조제2항)

타. 불송치 결정에 따른 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절차 구체화

- 1)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송치하도록 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안 제116조제2항)
- 2) 이의제기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절차와 서식을 규정(안 제116조항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경찰수사규칙 제정안

제1편 총칙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련 법령을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법」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에게 적용한다.

제3조(인권 존중 및 적법절차 준수) 사법경찰관리는 수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된다.
2. 수사절차의 지연으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3.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에 관련된 비밀을 엄수하고,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명예·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한다.

제2편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협력의 방식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가 수사준칙 제6조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요구·요청·신청 등(이하 “협력요구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에게 협력요구등을 할 때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서면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수사 현장에서 협력요구등을 하는 경우 등 제2항의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검사가 제3항의 간편한 방식으로 협력요구등을 하였을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이용하여 협력요구등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법경찰관리는 신속한 수사를 요하는 등 필요한 때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검사에게 협력요구등을 할 수 있다.

⑥ 사법경찰관리는 검사가 협력요구등을 하면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 내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기간 등에 대하여 검사와 협의한다.

⑦ 사법경찰관리는 협력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검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중요사건 의견제시·교환) 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검사에게 중요사건에 관하여 의견 제시·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검사의 요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따른다.

제6조(소재수사 사항 통보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를 서면으로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검사의 소재수사 요청에 협력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재수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찰조회요청에 관한 협력) 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로부터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시찰조회 협력을 요청 받은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검사로부터 제1항 이외의 사건에 대하여 시찰조회 협력을 요청받은 때에는 사건 내용, 요청 사유, 직무 수행 지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조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검사와의 협의)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사와 협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의요청서에 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적어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검사와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③ 수사준칙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조정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이하 “소속경찰관서장”이라고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별지 제7호서식의 협의요청서에 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적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사법경찰관리에게 피의자의 체포·출석요구·조사·호송, 압수·수색·검증, 참고인의 출석요구·조사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10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력의 구체적 내용·범위·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편 수사에 관한 사항

제1장 통칙

제10조(접수 전 점검과 조치) ① 사건기록담당직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로부터 요구·요청 등을 받거나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관계 서류 등이 법령에 따라 작성·편철되었는지 여부 및 검사가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② 사건기록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관계 서류 등이 법령에 따라 작성·편철되지 아니하거나, 검사가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건기록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요구·요청 등을 받거나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반환받아 이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이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서명을 기재하고, 접수대장에 접수일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성명 등을 기재한다.

제11조(회피)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11조에 따라 수사를 회피하려

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때, 수사 개시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④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본을, 그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은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때, 고소인등에게 통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이미 고지한 때,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3조(직무관할) 사법경찰관리는 소속 경찰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 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경우, 관할구역이 불분명한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사건의 단위) 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심사관) ① 경찰청장은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 확보를 위하여 각 경찰관서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심사관은 불송치 결정 사건을 비롯한 수사 전반의 점검, 각종 강제 수사의 적법·타당성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수사의 개시

제16조(수사의 개시) ① 사법경찰관은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 혐의를 인식하였을 때에는 법 제197조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입건하고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7조(입건 전 조사)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사(이하 “내사”라고 한다)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이하 “소속수사부서장”이라고 한다)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제1항의 내사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2. 내사종결

제1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내사중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

우

4. 이송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협의된 경우에 한한다)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공람종결

진정·탄원·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과 같은 내용인 경우

나.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다.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라.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마.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18조(불입건 결정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불입건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불입건 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피혐의자와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에게는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내사종결 결정만 통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혐의자나 진정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혐의자나 진정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④ 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본을, 그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은 피혐의자나 진정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때, 피혐의자나 진정인등에게 통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이미 고지한 때, 피혐의자나 진정인등에 관한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때, 수사 또는 재판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내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19조(고소·고발의 수리) ① 사법경찰관리는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고소·고발로 수리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제20조(고소·고발인 진술조서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서면에 의한 고소·고발을 수리하였으나 추가 진술이 필요한 경우 고소·고발인으로부터 보충서면을 제출받거나 추가로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자수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1조(고소의 대리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36조에 따라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피해자 이외의 고소권자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제2항 고소권자의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을 함께 제출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은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2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일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23조(고소·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고발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4조(변사사건 발생통보)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변사사건발생통보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발생통보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한 상황 등 제1항의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전화·팩스·전자우편 등 간편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신속하게 서면으로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5조(변사자의 검시·검증) ① 수사준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시조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검증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검시를 할 때에는 의사를 참여시켜 의사로 하여금 검안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시 조사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검시 등을 통해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으로 사료하는 때에는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6조(검시·검증조서의 송부 등)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검시조서나 검증조서를 송부할 때에는 의사의 검안서, 감정서, 촬영한 사진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검사와 검시를 한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 등에 관한 의견서에 따른다.

제27조(검시의 주의사항) 사법경찰관리는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하고, 변사자 발견 당시 변사자의 주변 환경을 조사할 것
2. 변사자의 소지금품이나 그 밖의 유류한 물건으로서 수사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보존하는데 유의할 것
3. 검시할 때에는 잠재지문 및 변사자의 지문 채취에 유의할 것
4. 자살자나 자살로 의심되는 사체를 검시할 때에는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유무, 유서가 있는 경우 그 진위를 조사할 것
5. 등록된 지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패 등으로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DNA 감정을 의뢰하고, 입양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입양기관 탐문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보강 조사를 할 것
6.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유족의 장례 절차에 불필요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제28조(검사와 참여자)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친족, 이웃사람·친구, 시·군·구·읍·면·동의 공무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29조(사체의 인도) ① 사법경찰관은 변사체에 대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에는 사체를 소지품 등과 같이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한다. 다만, 사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사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검시가 종료된 때라 함은 수사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때 또는 수사준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이후 검사가 의견을 제시한 때를 말하며, 검증이 종료된 때라 함은 부검이 종료된 때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체를 인도하였을 때에는 인수자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제30조(검사 이송 사건에의 처리)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8조에 따라 검사로부터 사건을 이송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수하여 처리한다.

제31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 사법경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인지 통보서에 따른다.

제3장 임의수사

제1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

제32조(출석요구) 수사준칙 제1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수사상 임의동행)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20조에 따라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심야조사의 제한)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야조사의 내용 및 필요한 사유를 청문감사관 등 각 경찰관서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35조(장시간 조사 제한)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사준칙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서 열람을 위해 조사연장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조사연장요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6조(신뢰관계인 동석) ① 수사준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동석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동석 조사 이후에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동석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피의자 또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으로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⑤ 피의자신문이나 피해자 조사에 동석하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나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행위 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법경찰관은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으로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신뢰관계자가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할 때에는 신문이나 조사 도중에 동석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은 피해자 이외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7조(조서와 진술서) ① 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44조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적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부터 제27호서식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들을 때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38조(수사과정의 기록)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26조에 따라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별도의 서면에 기록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수사과정확인서에 따른다.

제39조(실황조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현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피의사실을 확인하거나 증거물의 증명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황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실황조사를 할 때에는 거주자, 관리자 그 밖의 관계자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실황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실황조사서에 조사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실황조사서에 현장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감정의 위촉)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을 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절 변호인 참여·조력

제41조(신문 전 변호인 참여) ①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을 받았을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1.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
2.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는 경우

③ 제1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신청인으로부터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변호인 선임서
2. 별지 제34호서식의 변호인 참여 신청서

제42조(신문 중 변호인 참여) ① 사법경찰관리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1. 사법경찰관리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반복을 유도하는 경우
3. 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피의자신문 내용을 촬영·녹음하는 경우
5. 증거의 인멸·은닉·조작, 조작된 증거의 사용, 공범 도주 원조의 위협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6. 피해자나 해당 사건의 수사·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와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43조(사건관계인에 대한 적용) 제41조 및 제42조는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절 영상녹화

제44조(영상녹화) ①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44조의2제1항 또는 제221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사람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이후 조사를 재개하는 때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에는 조서 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않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③ 영상녹화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조사자·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⑤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에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에 대해서는 제3호의 사항도 고지하여야 한다.

제45조(영상녹화물의 제작·보관) ① 사법경찰관리는 영상녹화를 하였을 때에는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 2개를 제작하고,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조사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영상녹화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제4절 수배

제46조(지명수배)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2. 지명통보의 대상인 사람 중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긴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지명수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명수배를 한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7조(지명수배된 사람 발견 시 조치) ① 사법경찰관리는 지명수배된 사람(이하 “지명수배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

장을 제시하고 수사준칙 제32조에 따른 권리를 고지한 뒤 지명수배된 사람을 체포 또는 구속하고 별지 제36호서식의 권리고지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한 다음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그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46조제2항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에게 긴급체포한다는 사실과 수사준칙 제32조에 따른 권리를 고지한 뒤 긴급체포하여야 한다. 이때 지명수배자로부터 별지 제36호서식의 권리고지확인서를 받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8조(지명통보)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1. 범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2. 범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제49조(지명통보된 사람 발견 시 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지명통보된 사람(이하 “지명통보자”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지명통보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과 범죄사실의 요지, 지명통보한 관서(이하 “통보관서”라 한다)를 고지하고 발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관서에 출석하겠다는 내용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되어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지명수배·지명통보 해제)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해제하여야 한

다.

1.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
2. 지명통보자가 지명통보한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
3. 공소시효의 완성,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 피의자의 사망 등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4. 지명수배되었으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재발부되지 않은 사람
5. 그 밖에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구속

제51조(체포영장의 신청)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2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체포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때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52조(긴급체포) ① 법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사준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석방통보서에 따른다.

제53조(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①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는 현행범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당장에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체포 외에는 현행범인의 위법행위를 제지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제2항의 경우 현행범인인 때에는 범행과의 시간적 접촉성과 범행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준현행범인인 때에는 범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인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54조(현행범인 석방) ① 수사준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석방통보서에 따른다.

제55조(구속영장의 신청) 수사준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 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56조(체포·구속영장의 집행) ① 사법경찰관리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체포·구속 영장의 집행은 검사가 서명, 날인하여 교부한 영장 또는 검사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에 따른다.

③ 수사준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권리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피의자가 권리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7조(호송) ① 사법경찰관리는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의 도망·자살·신변안전·증거인멸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피의자를 호송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가장 근접한 경찰관서에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58조(체포·구속 통지 등)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체포·구속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제59조(체포·구속영장의 반환) 수사준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영장반환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제60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6 및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91조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에서 준용하는 제41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비변호인의 접견 등을 금지할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피의자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③ 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사법경찰관의 송치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61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① 수사준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53호서식 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석방통보서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석방보고서에 따른다.

제62조(구속의 취소)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여 피의자를 석방할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구속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송치할 사건의 경우에는 사전에 검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구속취소 동의요청서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59호서식의 석방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63조(구속 집행정지)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결정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61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구속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취소결정서에 따른다.

제2절 압수·수색·검증

제64조(압수·수색·검증 영장의 신청)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7조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부터 제65호서식까지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압수·수색·검증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65조(압수조서 등) ① 수사준칙 제40조에 따른 압수조서는 별지 제66호서식, 압수목록은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9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압수목록교부서에 따른다. 이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목록의 교부는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수사준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삭제·폐기·반환 확인서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압수목록에 삭제·폐기 또는 반환했다는 취지를 명시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66조(수색조서와 수색증명서) ① 사법경찰관은 수색을 한 때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별지 제70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8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수색증명서에 따른다.

제67조(압수물 환부와 가환부) ①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거나 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법 제134조에 따라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환부·가환부)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73호서식의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72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환부·가환부)에 첨부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한 때에는 피해자 및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74호서식의 압수물 환부·가환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압수물 보관) ①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압수목록에 적은 순위·번호를 기입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위탁보관)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적절한 보관인을 선정하여 성실하게 보관하게 하고 보관인으로부터 별지 제76호서식의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69조(압수물 폐기)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2항, 제3항의 압수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폐기)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3항의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79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동의서를 제출받거나 진술조서 등에 그 취지를 적어 두어야 한다.

제70조(압수물 대가보관)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대가보관)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보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조서를 작성한다.

제71조(검증조서) 수사준칙 제43조에 따른 검증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에 따른다.

제72조(준용규정) 제56조제1항 및 제2항, 제59조는 압수·수색·검증에 준용한다.

제3절 기타 강제수사 등

제73조(증거보전 신청) 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제74조(증인신문 신청)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증인신문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제75조(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제2항의 감정을 위하여 법 제172조제3항의 유치가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감정유치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신청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173조제1항의 처분을 위한 허가가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신청한다.

제76조(영장심의위원회)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법 제221조의5제1항에 따라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를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보완수사요구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결정서가 해당 경찰관서에 접수된 날(다만, 사법경찰관이 동일한 영장에 대하여 2회 이상 보완수사요구를 받아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추가로 재차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때)
 2.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때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이 경과하도록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장 신청일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이 경과한 때{다만, 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과 협의하여 영장신청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의 범위에서 영장 청구 여부 결정 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그 연장일이 경과한 때}
- ② 제1항의 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영장심의신청서에 따른다.

제5장 시정조치요구

- 제77조(시정조치 요구의 이행)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3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는 경우 별지 제87호서식의 사건기록 등본 송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 등본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본을 송부하는 때에는 해당 사건기록 전체를 등본하여 송부한다. 다만, 등본송부 요구의 사유가 사건기록의 일부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사전에 검사와 합의하여 해당부분에 한해 사건기록을 등본하여 송부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면서 의견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④ 법 제197조의3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결과 통보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시정조치 결과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법률상·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시정조치 결과통보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8조(징계요구 처리결과 등 통보) 경찰관서장이 수사준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징계요구의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89호 서식의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제79조(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수사준칙 제47조에 따른 고지확인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제6장 수사의 경합

제80조(수사의 경합 시 기록열람)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록 열람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사건기록열람요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은 때에는 요청 서면을 검토하여 열람 허용 여부 및 범위를 신속하게 결정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 사건기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외 사건기록의 열람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범죄인지서

2. 영장신청서

3. 고소장, 고발장

④ 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2호서식의 열람허가서에 열람을 허용하는 사건기록의 범위를 기재하여 제2항의 사건기록 중 열람을 허용한 사건기록 등본과 함께 사건기록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⑤ 사건기록담당직원은 검사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관리대장에 열람 일시, 열람 검사의 성명 등을 기재한다.

제7장 범죄피해자 보호

제81조(범죄피해자 보호의 원칙) ①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범죄피해자가 범죄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③ 이 장의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82조(신변보호) ① 수사준칙 제15조제2항의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신변경호 및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귀가 시 동행
 3. 임시숙소 제공
 4. 주거지 순찰강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비상연락망 구축 등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② 본 조항은 범죄신고자 등 참고인으로서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83조(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의 결정(다만, 이송결정은 제외한다)을 하기 전까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신변보호 신청권, 신뢰관계자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2. 범죄피해자구조금, 심리상담·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 단체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4조(회복적 대화) ①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신청과 그 상대방의 동의에 의하여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회복적 대화 진행을 의뢰할 수 있다.

제85조(범죄피해의 평가)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보호·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범죄피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장 수사서류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제86조(문서의 서식)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27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단순하고 정형적인 사건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128호서식부터 별지 제140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제87조(장부와 비치서류) ① 사법경찰관은 형사사법업무에 필요한 장부와 서류철을 갖추어 두고 보존기간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와 서류철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작성·저장·관리·보존할 수 있다. 이때 전자 장부와 서류철은 종이 장부와 서류철의 개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8조(범죄통계원표) 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한다.

제89조(수사서류 열람·복사) ①수사준칙 제69조(수사준칙 제1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은 해당 수사서류를 보유·관리하는 경찰관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전부의 열람·복사를 허용
2. 부분공개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중 일부의 열람·복사를 허용
3. 비공개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에 대하여 열람·복사 불허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 그 변호인이 조사 당일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경우 공개 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검토 후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수사서류에 대해 열람·복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신청인에게 부존재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사서류를 제공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비실명처리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특칙

제1절 전자약식사건 특칙

제90조(전자약식절차의 동의) 사법경찰관리는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식전자문서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전자약식사건”이라 한다)을 수사할 때에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처리되는 약식절차(이

하 “전자약식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안내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동의할 때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전자약식절차 동의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1조(전자약식절차의 예외) 사법경찰관리는 약식전자문서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자약식절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절 소년·장애인·외국인 등 사건에 관한 특칙

제92조(소년에 대한 조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동기, 그 소년의 성행, 경력, 가정 상황, 교우관계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별도의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소년 피의자에 대하여는 가급적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 체포·구속 또는 임의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④ 소년 피의자가 체포·구속된 경우에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그 사건을 조사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3조(장애인에 대한 조사) 사법경찰관리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할 때 직권 또는 장애인 본인, 보호자, 법정 대리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화·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94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주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는 경우에는 국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교통할 수 있고, 체포·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체포·구속된 외국인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영사기관 체포·구속 통보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구속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5호서식의 영사기관 사망통보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5조(한미행정협정사건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96호서식의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에 따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주한 미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공무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공무증명서의 사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절 보전절차에 관한 특칙

제96조(몰수·부대보전 신청) 사법경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부대보전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몰수·부대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제97조(추정보전의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추정보전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추정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추정보전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추정보전명령 취소 신청서에 따른다.

제4편 수사종결 등에 관한 사항

제1장 통칙

제98조(사건 이송)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관할이 없거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2. 법령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건 이송 의무를 부여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협의된 경우에 한한다)에 이송할 수 있다.

1.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다른 경찰관서나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해당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별지 제100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99조(장기사건 수사종결) ①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인지 후 1년이 지난 사건은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사건관계인 조사, 관련 자료 추가확보·분석, 외부 전문기관 감정의 장기화, 범인 미검거 등 계속 수사가 필요한 때에는 해당 사법경찰관

리가 소속된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면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100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수사준칙 제53조에 따른 피의자와 고소인 등에 대한 통지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의자나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제외한다)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의자나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01호서식부터 별지 제103호서식까지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④ 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⑤ 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본을, 그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⑥ 수사준칙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지 요구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불송치 통지요구서에 따른다.

⑦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106호서식 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불송치결정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⑧ 사법경찰관은 고소인등에게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54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장 수사중지

제101조(수사중지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피의자중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나. 2월 이상 해외체류, 중병 등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동안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다. 의료사고·교통사고·특허침해 등 사건에 있어서 수사의 종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나 그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라. 다른 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 결과가 수사의 종결을 위해서 필요하나 그 결정이나 재판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마.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 증거자료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이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2. 참고인중지: 참고인·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중지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수사중지 결정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수사중지 사건기록 송부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제1호의 나목부터 다목까지 중 하나의 사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매월 1회 이상 해당 수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2조(소재수사 등) ① 사법경찰관은 소재불명의 사유로 수사중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소재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소재불명의 사유로 수사중지된 사건의 경우 매 분기 1회 이상 소재수사하는 등 수사중지 사유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3조(수사중지 시 지명 수배·통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할 때에는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04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 절차) ① 수사준칙 제54조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이하 ‘소속상급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11호서식의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도 할 수 있다. 이때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경찰관서는 이를 지체 없이 제1항의 소속상급경찰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소속상급경찰관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서를 제출받거나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수사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경우: 수용

가. 사건 재개 지시. 이 경우 담당 사법경찰관리의 교체를 함께 지시할 수 있다.

나. 상급경찰관서 이송 지시

2. 이의제기가 이유 없는 경우: 불수용

-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결정을 통보받은 소속수사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소속상급경찰관서장에게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소속상급경찰관서장은 제3항의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2호서식의 수사중지사건 이의처리결과통지서에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적어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 진행 중에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른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상급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5조(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된 사건의 피의자를 발견하는 등 수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즉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1조제5항에 따라 피의자 등의 소재발견 등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발견 통보서에 따른다.

제3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

제106조(송치 서류) ①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15호서식에,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116호서식에, 기록목록은 별지 제1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송치 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118호서식의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 목록
4. 송치 결정서

5. 그 밖의 서류

③ 수사준칙 제58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소속경찰관서장 또는 소속수사부서장의 명의로 한다.

④ 제1항의 송치 결정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107조(추송)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추가송부서는 별지 제119호 서식에 따른다.

제108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통보 등)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보완수사 결과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수사준칙 제59조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대상이 아니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보완수사 결과통보서에 적어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결과를 통보하면서 새로운 증거물,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기존의 영장 신청을 유지하는 경우: 보완수사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

2. 기존의 영장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보완수사결과통보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적어 검사에게 통보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9조(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① 소속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직무배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건 담당 사

법경찰관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② 소속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의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통보서 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제110조(법원송치) ① 경찰서장은 「소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송치할 때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송치서류에 관하여는 제106조를 준용한다.

제4장 사건 불송치와 재수사

제111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2.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1호를 제외한다)

3. 공소권없음

가. 형을 면제한다고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나.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법원의 재판·명령이 확정된 경우

다.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 라. 사면이 있는 경우
- 마.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 사.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 아.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 제2호를 제외한다)
- 자.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 차.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카.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고발이 없거나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의 수표회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험가입 등 법률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준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 파.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취소되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 하.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4. 각하: 고소·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하여도 동일한 결정 또는 처분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고소·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고발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 및 관련자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 받을 사람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압수물 처분을 완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2조(불송치 서류) ① 수사준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불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23호서식에,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116호서식에, 기록목록은 별지 제117호서식에 따른다.

② 불송치 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124호서식의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2.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목록
4. 불송치 결정서
5. 그 밖의 서류

③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명의인 및 불송치 결정서 작성인에 관하여는 제10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3조(일부 결정 시 조치 등) ① 하나의 사건에 수사준칙 제51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송치·불송치·수사중지 결정이 병존하는 병존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기록을 분리하여 송치 및 송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인증하여 등사 보관하고 송치결정서·불송치결정서·수사중지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결정서별로 압수물총목록과 기록목록 등을 첨부한 후 각 별책으로 편철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 원본과 함께 검사에게 송치 및 송부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 송부한 불송치결정서·수사중지결정서 등을 반환함으로써 법 제245조의5제2호,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제5항에 따른 관계서류와 증거물의 반환에 갈음한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하나의 사건에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불송치·수사중지 결정만이 병존하는 경우 검사는 관계서류 및 증거물 원본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송치 및 송부된 사건을 공소제기(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8호 내지 제11호에 따른 사건송치 결정 및 제7호에 따른 타 기관 이송 포함)한 이후, 사법경찰관이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거나 수사중지 사건을 재기수사하여 송치 또는 송부할 때에는 추가된 새로운 증거물, 관계서류와 함께 제2항의 관계서류와 증거물 등본 중 관련 부분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4조(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제111조제1항제1호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115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64조제2항단서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결과서는 별지 제125호서식에 따른다.

제116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6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송치한다. 이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 없이 사건송치서·송치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다만, 제113조제4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따른다.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의견요청(중요사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아래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내 용				
비 고				
사법경찰관/리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의견(중요사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아래 사건에 관한 검사 의 의견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내 용				
비 고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피의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귀청에서 기소중지한 아래 사람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므로 통보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송 치 일 자		
송 치 번 호		
사 건 번 호		
발 견 경 위		
비 고		
첨 부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참고인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귀청에서 참고인중지한 사건의 참고인등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므로 통보합니다.

참고인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전 화	(주택)		(직장)		
대상사건	피 의 자					
	죄 명					
	송 치 일 자					
	송 치 번 호					
	사 건 번 호					
발견 경위						
비 고						
첨 부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소재수사 결과 통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귀청에서 요청한 소재수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소재수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	분				
	직	업				
	주	거				
	전	화	(본인)		(직장)	
대상 사건	피	의	자			
	죄	명				
	송	치	일	자		
	송	치	번	호		
	사	건	번	호		
소재수사 결과						
비 고						
첨 부						
사법경찰관/리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협의요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아래 사건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협의 요청 사항과 이유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협의요청(관서장)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아래 사건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사건 담당자 협의 사항				
관서장 협의 요청 사항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수 신 :

참 조 :

제 목 : 회피신청

다음 사건에 대해 회피를 신청합니다.

1. 대상 사건

2. 회피 사유

3. 증빙 서류

제 호

수 신 : 귀하

제 목 : 수사진행상황 통지

귀하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진행상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시		사건번호	
주요 진행상황			
담당팀장	○○과 ○○팀 경○ ○○○ 02-0000-0000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 관할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아동보호 전문기관(1577-1391) 등
 -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지역별 공단지부에 문의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 수사 심의신청 제도(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
- ※ 고소·고발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장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수 신 :

참 조 :

제 목 : 범죄인지

접수번호 :

사건번호 :

다음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지합니다.

1. 피의자 인적사항

:
:
:

2. 범죄경력자료

3. 범죄사실의 요지

4. 죄명 및 적용법조

5. 수사단서 및 범죄 인지경위

제 호

수 신 : 귀하

제 목 : 불입건결정 통지(피혐의자)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일 시		접 수 번 호	
죄 명			
결 정 종 류			
주 요 내 용			
담 당 팀 장	☎ 02-0000-0000		

※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민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심의신청 제도(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

장

제 호

수 신 : 귀하

제 목 : 불입건결정 통지(진정인등)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일 시	. . .	접 수 번 호	0000-000000
죄 명			
결 정 종 류	1. 내사종결 () 2. 내사중지 () 3. 이 송 () : (☎:) 4. 공람종결 ()		
주 요 내 용			
담 당 팀 장	☎ 02-0000-0000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 관할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아동보호 전문기관(1577-1391) 등
-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지역별 공단지부에 문의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민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심의신청 제도(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

장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변사사건 발생 통보	
우리 서 관내에서 아래와 같은 변사사건이 발생하였기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발 견 일 시	
발 견 장 소	
신 고 일 시	
변 사 원 인	
종 별 방 법	
변 사 자 인 적 사 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주 거 :
발 견 자 인 적 사 항	성 명 : 직 업 : 주 거 : 변사자와관계 :
발 견 경 위	

피 의 자 (피 내 사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주 거 :			
사 인 및 의 사 소 견	직접사인 : 중간선행사인 : 선행사인 :			
사망추정시각				
사 체 의 상 황 (위 치, 착 의, 외상 유무등사체의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				
증 거 품 (소지금품, 흉기등범행 공용물, 유서, 일지등 존 재 사 항) 및 참 고 사 항				
유 족 의 진 술	진술일시		변사자와 관계	
	주 소			
	직 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연 령	

관계인진술	진술일시		변사자와 관계	
	주 소			
	직 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연 령	
사 건 개 요				
경 찰 조 치 및 의 견				
담당경찰관				
사법경찰관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통보						
우리 서 관내에서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 변사사건이 발생하였기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사 망	일 시					
	장 소					
사 고 일 시						
발 생 장 소						
변 사 자 인 적 사 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주 거 :				
피 의 자 (피 내 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 업		변사자와관계		성별	
	주 거					
	집전화번호		회사전화번호			
	진술일시		휴대전화번호			
	진술내용					

의 사 소 견	
특 이 사 항	
경 찰 조 치 및 의 견	
담당경찰관	
사법경찰관	

검 시 조 서						
사법경찰관 은/는 을/를 참여하게 하고 다음의 변사자를 검시하다.						
변 사 자	성 명		성 별		연 령	
	직 업		국 적			
	등록기준지					
	주 거					
변 사 장 소						
검 시 장 소						
사체의모양 및상황						
변 사 년 월 일						
사 인						
발 견 일 시						
발 견 자						
의사의 검안 및 관계자의 진술						
소지금품 및 유류품						
사체및휴대품의 처 리						
참 여 인						
의 견						

이 검사는 0000. 00. 00 00:00에 시작하여 0000. 00. 00 00:00에 끝나다.

사법경찰관

인

인

검 증 조 서

사법경찰관 은 을 참여하게 하고 000외 0명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하다.

1. 검증의 장소(대상)

2. 검증의 목적

3. 검증의 참여인

4. 검증의 경위 및 결과

이 검증은 0000. 00. 00. 00:00에 시작하여 0000. 00. 00. 00:00에 끝나다.

사법경찰관

인

인

제 호

수 신 :

제 목 : 변사사건 처리등에 관한 의견

제호(접수) 변사사건 처리에 관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변 사 자 인 적 사 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주 거 :
사 인	직접사인 : 간접사인 :
처 리 결 과 및 의 견	
첨 부 서 류	
사법경찰관	

사 체 및 소지금품 인수

☐ 인 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주거			
사망자와의 관계			

☐ 사 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연령		국적	
등록기준지					
주소					

☐ 소지금품

품명	수량	비고

☐ 인수경위

일시·장소			
인계자	소속 :	계급 :	성명 :

위와 같이 사체와 소지금품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인수자 :

①인

장 귀하

o

o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통보				
아래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하였으므로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소 속			
	직위(직급)			
죄 명				
인지 경위				
범죄 사실				
비 고				
사법경찰관				

출 석 요 구

제 호

귀하에 대한 사건 (접수번호 :)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에 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요지 >

< 구비서류 등 >

- 1.
- 2.
- 3.

출석하실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와 위 구비서류,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롭게 주장하고 싶은 사항,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

□ 경찰관서 안내

□ 수사과정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제도

- **변호인 참여제**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임된 변호사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사 심의신청 제도(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수사과정 및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 **경찰수사관 기피 신청 제도(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인권침해.편파수사 등의 사유로 담당수사관 변경을 희망할 경우,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을 통해 담당수사관 기피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수사관 변경 사유 해당 여부 심의 후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 <http://www.humanrights.go.kr>)**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10, <http://www.epeople.go.kr>)**
사건과 관련하여 고충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

제 호

귀하에 대한 사건 (접수번호:)의 (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에 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요지 >

< 구비서류 등 >

- 1.
- 2.
- 3.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로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 등으로 경찰관서 직접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FAX·e-mail 등 편리한 매체를 이용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장조사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

□ 경찰관서 안내

□ 수사과정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제도

- **변호인 참여제**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임된 변호사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사심의신청 제도(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수사과정 및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 **경찰수사관 기피 신청 제도(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인권침해, 편파수사 등의 사유로 담당수사관 변경을 희망할 경우,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을 통해 담당수사관 기피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수사관 변경 사유 해당 여부 심의 후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 <http://www.humanrights.go.kr>)**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10, <http://www.epeople.go.kr>)**
사건과 관련하여 고충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 의 동 행 동 의

동행을 요구한 일시 · 장소	일 시 : 장 소 :
동행할 장소	
동행의 이유 (사건 개요)	
동행대상자	성 명 :
담당경찰관	소 속 : 계 급 : 성 명 :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찰관으로부터 동행을 요구받았고,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안내 받았습니다. 이에,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위 본인

조 사 연 장 요 청

요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비 고		※ 요청에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기재

요청인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조서의 열람을 위해 요청인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조사시간 연장을 요청합니다.

요청인

(서명)

동 석 신 청

(피 (혐) 의 자)

수 신 : 사법경찰관

귀서 접수번호 제 호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을/를 조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합니다.

신뢰 관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거(사무소)	
	전화번호	
	피(혐)의자와의 관계	
동석 필요 사유		

※ 소명자료 별첨

신청인

인

(사건관계인)

수 신 : 사법경찰관

귀서 접수번호 제 호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사건관계인 을/를 조사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사건관계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합
니다.

사건관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전화번호	
신뢰 관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사무소)	
	전화번호	
	사건관계인과의 관계	
동석 필요 사유		

※ 소명자료 별첨

신 청 인

인

피 의 자 신 문 조 서

피 의 자 :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에서 은 사법경찰리 ○○ ○○○
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주민등록번호는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주소는

연락처는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1.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 : 피의자는 영상녹화를 희망하는가요

답 :

문 :

답 :

◦

◦

문 : 사건을 송치하기 전 추가적으로 서면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것인가요

답 :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준 바) 진술한 대로 오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진 술 자

인

인

사법경찰리

인

피의자신문조서 (제0회)

피 의 자 :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에서 은 사법경찰리 ○○ ○○○을 참여하게 한 후,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1.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 : 피의자는 영상녹화를 희망하는가요

답 :

문 :

답 :

◦

◦

문 : 사건을 송치하기 전 추가적으로 서면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것인가요

답 :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준 바) 진술한 대로 오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진 술 자

인

인

사법경찰리

인

진 술 조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주 거 :

등록기준지 :

직 장 주 소 :

연 락 처 :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위의 사람은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와 ○○○ 관계에 있습니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

◦

문 : (피해자인 경우) 담당조사관으로부터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
정보에 대한 안내서를 교부받았나요

답 :

문 :

답 :

◦

◦

문 : 사건을 송치하기 전 추가적으로 서면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것인가요

답 :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거나 증감·변경
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진 술 자

진 술 조 서 (제 0 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사람은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에 임의 출석하였는 바, 사법경찰
관은 진술인 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전회에 이어 계속 문답을 하다.

문 :

답 :

문 : 사건을 송치하기 전 추가적으로 서면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것인가요

답 :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준 바) 진술한 대로 오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진 술 자

인

인

수사 과정 확인

구 분	내 용
1. 조사 장소 도착시각	
2.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 종료시각 :
3.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 종료시각 :
4. 기타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는 를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로부터 확인받음

확 인 자 : ㉠

: ㉠

수사 과정 확인(조서미작성)

대상자	성명		사건관련 신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구분	내용
1. 조사 장소 도착시각	
2. 조사 장소를 떠난 시각	
3. 조서 미작성 이유	
4. 조사 외 실시한 활동	
5. 참여 변호인	
6.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는 를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로부터 확인받음

확 인 자 : ㉠

: ㉠

실 황 조 사	
은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실황을 조사하다.	
실 황 조 사 일 시 · 장 소	
실 황 조 사 목 적	
참 여 인	
실 황 조 사 경 위 및 결 과	
이 실황조사는 2000. 00. 00. 00:00에 시작하여 2000. 00. 00. 00:00에 끝나다.	
인	
인	

제 호
수 신 :
제 목 : 감정위촉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의 감정을 위촉합니다.

사 건 번 호	
감 정 대 상 (종류, 품명)	
위 촉 사 항	
비 고	※ 감정처분허가장이 첨부된 경우, 감정처분허가장은 감정서와 함께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사법경찰관	

변호인(변호사) 참여 신청

일 시	20 년 월 일 :			
대상자	구 분	☐ 피의자 ☐ 피혐의자 ☐ 피해자 ☐ 참고인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	성 명		대상자와의 관 계	
	연 령		전화번호	
	주 소			
변호인	성 명		전화번호	

※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사 항 >

- ☐ 변호사의 참여로 인해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호사 참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신문·조사 중이라도 변호인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
 2. 피의자 등을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반복을 유도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피의자신문 내용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하여 변호인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하는 간단한 메모는 제외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
- ☐ 신문·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조사 후 조서를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문·조사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조사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관련 내용은 피혐의자, 피해자, 참고인 조사시에도 준용됩니다.

영 상 녹 화 동 의

진 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상기인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 참고인 · 피해자로서 진술함에 있어
진술내용이 영상녹화됨을 고지받고 강제적인 압력이나 권유를 받음이 없이
영상녹화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 명 : ㉠

장 귀하

권리 고지 확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세)

주거 :

본인은 경 에서 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의 이유와 함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명을 할 수 있으며,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위 확인인

위 피의자를 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음(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제 호

수 신 :

제 목 : 체포영장 신청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에 인치하고 에 구금하려 하니 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이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 지 와 사 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 존재시 그 취지 및 범죄사실		
비 고		
사법경찰관		

긴 급 체 포		
제 호		
피 체 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라, ○○○○ 피의사건과 관련된 위 피체포자를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함 사법경찰관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범 죄 사 실 및 체 포 의 사 유		
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		
인 치 한 일 시		
인 치 한 장 소		
구 금 한 일 시		
구 금 한 장 소		
구금을 집행한 자의 관직 및 성명		

제 호

수 신 :

제 목 : 긴급체포 승인 요청

다음 사람에 대한 00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하였기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합니다.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긴급체포한 일시				
긴급체포한 장소				
긴급체포한 자의 관직 및 성명				
인 치 한 일 시				
인 치 한 장 소				
구 금 한 일 시				
구 금 한 장 소				
범 죄 사 실				
소 명 자 료				
긴급체포한 사유				
체포를 계속하여야 할 사 유				
사법경찰관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석방 통보(긴급체포불승인)

다음 피체포자를 긴급체포 불승인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기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7조제4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피 체 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긴급체포한 일시		
긴급체포한 장소		
긴급체포한 사유		
석 방 한 일 시		
석 방 한 장 소		
불 승 인 사 유		
석방한 자의 관직 및 성명		

사법경찰관

현행범인체포		
제 호		
피 체 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 피의사건과 관련된 위 피체포자를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함 소속관서 사법경찰관/의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범 죄 사 실 및 체 포 의 사 유		
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		
인 치 한 일 시		
인 치 한 장 소		
구 금 한 일 시		
구 금 한 장 소		

현행범인인수		
제 호		
피 체 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에 따라, ○○○○ 피의사건과 관련된 위 피체포자를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인수함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체 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범 죄 사 실 및 체 포 의 사 유		
인 수 한 일 시		
인 수 한 장 소		
인 치 한 일 시		
인 치 한 장 소		
구 금 한 일 시		
구 금 한 장 소		

피의자 석방(현행범인)

제 호

다음 피체포자(현행범인)를 아래와 같이 석방합니다.

피 체 포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체포한 일시		
체포한 장소		
체포의 사유		
석방 일시		
석방 장소		
석방 사유		
석방자의 관직 및 성명		
비고		
사법경찰관		

제 호

수 신 :

제 목 : 석방 통보(현행범인)

다음 피체포자(현행범인)를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기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피 체 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체 포 의 사 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석 방 사 유		
석방자의 관직 및 성명		
비 고		

사법경찰관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구속영장 신청(미체포)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에 구속하려 하니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변호인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비고		
사법경찰관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구속영장 신청(체포영장)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하여 에 구속하려 하니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변호인		
체포한 일시·장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비고		

사법경찰관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구속영장 신청(현행범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에 구속하려 하니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체포한 일시·장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비 고		
사법경찰관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구속영장 신청(긴급체포)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하여 에 구속하려 하니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변 호 인		
체포한 일시·장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비 고		
사법경찰관		

제 호

수 신 : 귀하

제 목 : 체포 · 긴급체포 · 현행범인체포 · 구속통지

1. 피 의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거 :

2. 위 사람을 피의사건으로 하여 에 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3. 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는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된 위 피의자 본인 또는 그 변호인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에 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 범죄사실의 요지 및 의 이유 1부

담 당 자		소속 및 연락처	
-------	--	----------	--

사법경찰관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50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영장 반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따라 별지 영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환합니다.	
영 장 종 별	
영 장 발 부 일	
영 장 번 호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죄 명	
영 장 반 환 사 유	
첨 부 : 영 장	
사법경찰관	

제 호

제 목 :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

「형사소송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제91조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에서 준용하는 제41조에 따라 다음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접견 등 금지를 결정합니다.

[대상사건]

사건번호 :

죄 명 :

[피의자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거 :

직 업 :

체포구속일자 :

접견등금지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일)

[접견 등 금지 결정 내용]

[결정 사유]

제 호

제 목 :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

「형사소송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제91조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에서 준용하는 제41조에 따라 결정한 다음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 등 금지 조치를 취소합니다.

[대상사건]

사건번호 :

죄 명 :

[피의자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거 :

직 업 :

체포구속일자 :

접견등금지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일)

[취소 대상 '접견 등 금지 조치' 내용]

[취 소 사 유]

피의자 석방(체포영장)

제 호

다음 피체포자(체포영장)를 아래와 같이 석방합니다.

피 체 포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체포한일시		
체포한장소		
체포의사유		
석방일시		
석방장소		
석방사유		
석방자의관직및성명		
체포영장번호		-

사법경찰관

피의자 석방(긴급체포)

제 호

다음 피체포자(긴급체포)를 아래와 같이 석방합니다.

피 체 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긴급체포한일시		
긴급체포한장소		
긴급체포의 사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석 방 사 유		
석방자의 관직 및 성명		
비 고		

사법경찰관

제 호

수 신 :

제 목 : 석방 통보(체포영장)

다음 피의자(체포영장)를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기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보합니다.

피 체 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체 포 의 사 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석 방 사 유		
석방자의 관직 및 성명		
체 포 영 장 번 호		-

사법경찰관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56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석방 보고(긴급체포)

다음 피체포자를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기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고합니다.

피 체 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긴급체포한일시		
긴급체포한장소		
긴급체포의 사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석 방 사 유		
석방자의 관직 및 성명		
사법경찰관		

구속 취소결정

제 호

다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구 속 일 시		
구 속 장 소		
구 속 의 사 유		
구 취 소 사 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석방자의관직및성명		
영 장 번 호		-
사법경찰관		

제 호				
수 신 :				
제 목 : 구속취소 동의 요청				
다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아래와 같이 취소하려 하니 구속취소 동의를 요청합니다.				
사 건 번 호			영 장 번 호	-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죄 명				
구 속 일 시				
구 속 장 소				
구 속 의 사유				
구 속 취 소 사유				
비 고				
사법경찰관				

제 호

수 신 :

제 목 : 석방 통보(구속취소)

다음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기에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구 속 일 시		
구 속 장 소		
구 속 의 사 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구 취 소 사 유		
석방자의 관직 및 성명		
영 장 번 호		
사법경찰관		

구속집행정지결정

제 호

다음 피의자에 대한 구속집행을 아래와 같이 정지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구 속 일 시		
구 속 장 소		
구 속 사 유		
집 행정 지 사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제 한 주 거 등		
석방의관직및성명		
영 장 번 호		

사법경찰관

제 호

수 신 :

제 목 : 구속집행정지 통보

아래와 같이 다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였기에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구 속 일 시		
구 속 장 소		
구 속 사 유		
집행정지 사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석방자의관직및성명		
영 장 번 호		
사법경찰관		

구 속 집 행 정 지 취 소 결 정

제 호

다음 피의자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구 속 일 시		
구 속 장 소		
집행정지결정일		
취 소 사 유		
영 장 번 호		
사법경찰관		

제 호

수 신 :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사전)

다음 사람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려 하니 까
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 (혐)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압 수 할 물 건		
수색·검증할 장소, 신 체 또 는 물 건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 지 와 사 유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 별 · 건 강 상 태		
비 고		
사법경찰관		

제 호

수 신 :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다음 사람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려 하니 까
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 (혐)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대 상 계 좌	계좌명의인	☐ 피(혐)의자 본인 ☐ 제3자(인적사항은 별지와 같음)
	개설은행·계좌번호	
	거 래 기 간	
	거래정보 등의 내용	
압 수 할 물 건		
수 색 · 검 증 할 장 소 또는 물 건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 지 와 사 유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비 고		
사법경찰관		

제 호

수 신 :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후)

다음 사람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압수·수색·검증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 (혐)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긴급압수·수색·검증한 자의 관 직 · 성 명		
긴급압수·수색·검증한 일시		
긴 급 수 색 · 검 증 한 장 소 · 신 체 또는 물건		
긴 급 압 수 한 물 건		
범죄사실 및 긴급압수· 수색·검증한 사유		
체포한 일시 및 장소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른 경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 행 을 한 사 유		
신체검사를 한 자의 성 별 · 건 강 상 태		
비 고		

사법경찰관

압 수 목 록								
번호	품 종	수량	소지자 또는 제출자		소 유 자		경찰의견	비고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제 호

수 신 :

제 목 : 압수목록 교부

○○○에 대한 ○○○○ 피(혐)의사건에 관하여 ○○○로부터 다음 물건을 압수하였으므로 이에 압수목록을 교부합니다.

연번	품 종	수 량	비 고

사법경찰관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69호서식]

제 호

수 신 : 귀하

제 목 : 전자정보 삭제 · 폐기 · 반환 확인

피압수자 ○○○에 대한 ○○○○ 피(혐)의사건에 관하여 압수하지 아니한 전자정보를 하였으므로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사법경찰관

수 색 조 서	
에 대한 피(혐)의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 은 를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수색하다.	
수 색 장 소	
참 여 인	
수색한 신체 개 소 · 물 건	
수 색 결 과	
수 색 시 간	착수 : 0000. 00. 00. 00:00
	종료 : 0000. 00. 00. 00:00
사법경찰관 (인) (인)	

수 색 증 명

제 호

수 신 :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 00. 00. 000000에서 000000을 수색한
결과, 증거물 등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사법경찰관

제 호
수 신 :
제 목 : 압수물 처분 지휘 요청(환부·가환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압수물인 다음 물건에 대하여, 지휘를 요청합니다.

연번	품 종	수량	피압수자	환부·가환부 받을 사람	비 고

사법경찰관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주거			

귀 관서에서 증거품으로 압수 중인 다음 압수물건을 청구인에게 환부(가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인 : 인

피의자					
죄명					
압수번호		접수번호		사건번호	
연번	품종		수량	비고	

장 귀 하

압수물 환부(가환부) 영수

[영 수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주거			

귀 관서에서 증거품으로 압수 중인 다음 압수물건을 환부(가환부) 받았습니다.

영수인 : 인

피의자						
죄명						
압수번호			접수번호		사건번호	
기록면수	연번	품종			수량	비고

장귀하

제 호

수 신 :

제 목 : 압수물 처분 지휘 요청(위탁보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압수물인 다음 물건의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하여 위탁
보관 지휘를 요청합니다.

연번	품 종	수 량	비 고

사법경찰관

압수물 보관 서약

[서 약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주거			

다음 압수물건에 대한 보관명령을 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보관할 것은 물론 언제든지 지시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서약인 : (인)

피의자					
죄명					
압수번호			접수번호		사건번호
연번	품	종	수량	보관장소	비고

장귀하

제 호

수 신 :

제 목 : 압수물 처분 지휘 요청(폐기)

에 대한 피의사건의 압수물에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어 폐기 지휘를 요청합니다.

연번	품 종	수 량	비 고

사법경찰관

압수물 폐기조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는 000를 참여하게 하고 압수물을 다음과 같이 폐기한다.

번 호	품 종	수 량	이 유	비 고

인

인

압수물 폐기 동의

[동 의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주거			

다음 압수물건을 폐기함에 동의합니다.

동 의 인 : ①

피의자						
죄명						
압수번호			접수번호		사건번호	
연번	품종			수량	비고	

장귀하

제 호

수 신 :

제 목 : 압수물 처분 지휘 요청(대가보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압수물에 부패(멸실 등)의 우려가 있어 대가보관 지휘를 요청합니다.

연번	품 종	수 량	비 고

사법경찰관

압수물 대가보관조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 은 을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대가보관하다.

대가보관금액				보관자	
번호	품종	수량	매각대금	이유	매수자

사법경찰관 인
 인

제 호

수 신 :

제 목 : 증거보전 신청

다음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범 죄 사 실			
증 명 할 사 실			
증거 및 보전의 방법			
증 거 보 전 을 필요로 하는 사유			
사법경찰관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83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증인신문 신청

다음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증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범 죄 사 실			
증 명 할 사 실			
신 문 사 항			
증인신문청구의 요건이 되는 사실			
변 호 인			
사법경찰관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84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감정유치장 신청

다음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유치하러 하니 까지 유효한 감정유치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범 죄 사 실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유치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유 치 할 장 소		
유 치 기 간		
감정의 목적 및 이유		
감정인	성 명	
	직 업	
비 고		
사법경찰관		

제 호

수 신 :

제 목 : 감정처분허가장 신청

다음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까지 유효한 감정처분허가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감 정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감정위촉연월일				
감 정 위 촉 사 항				
감 정 장 소				
범 죄 사 실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사유				
둘 이상의 허가장을 신청하는 취지와사유				
감 정 에 필 요 한 처 분 의 이 유				
변 호 인				
비 고				

사법경찰관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86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영장심의신청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영 장 종 별		영 장 신 청 번 호	
영 장 신 청 일 시		영 장 청 구 여 부 결 정 요 청 기 한	
관할지방검찰청		담 당 검 사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변 호 인			
죄 명			
범 죄 사 실 및 영장신청의 이유			
담당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유			
심 의 신 청 사 유			
소 명 자 료			
사법경찰관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087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사건기록등본 송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건기록의 등본을 송부합니다.

사 건 번 호	
요 구 일 자	
요 구 번 호	
사건기록등본 송부 관련 의견	
붙 임	

사법경찰관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88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시정조치 결과통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요 구 일 자	
대상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시정조치요구 내용			
시정조치요구 이행여부	☐ 이행 ☐ 불이행		
이행 결과			
사법경찰관			

제 호

수 신 :

제 목 :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6조제 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징계요구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합니다.

사건 번호			
대상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징계요구 요지			
처리 결과			
이유			
장			

고 지 확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세)

주 거 :

본인은 경 에서 신문을 받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위 확인인

위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였음(위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제 호

수 신 :

제 목 : 사건기록열람요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8조제1항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죄 명			
열람요청 기록		- - - -	
사법경찰관			

사건기록 열람허가

제 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8조제1항에 따라 검사 이 요청한 사건기록 열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허가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열람요청기록		- - - -
열람허가기록		- - - -
열람불허기록 및 불 허 사 유		- - - -
비 고		※첨부: 열람을 허용한 사건기록 등본
사법경찰관		

전 자 약 식 절 차 동 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거				
진행사항 통지방법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록 아이디 (id)			
	휴 대 폰		전자우편	
	통지수단	☐ 휴대폰문자서비스 ☐ 전자우편(e-mail)		

1. 동의를 하게 되면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4조에 따라 사건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2. 통지방법에서 선택한 휴대폰문자서비스 또는 전자우편은 법률에 따라 약식명령이나 그 밖에 소송에 관한 서류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 등재되었음을 알리는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3. 통지를 받은 후 위에 기재된 아이디(id)로 로그인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초기비밀번호는 위에 등록된 휴대폰문자서비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됩니다.
4. 약식명령을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만일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면 등재사실을 알린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됩니다.
5. 법률 제4조에 따라 전자약식처리절차로 사건이 처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서면 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기 전까지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동의를 하였어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률 제3조 제3항에 해당되는 사건은 법률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며, 동 법률에 따라 약식명령 등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받는 것을 원합니다.

0000. 00. 00.

신 청 인(피의자) :

작 성 자 :

(OOOOO Police station)

전화(Telephone) :

팩스(Fax) :

제 호

수 신(To) :

제 목(Subject) : 영사기관 체포(구속) 통보 (Arrest(Detention) Notification)

1. 피의자(Personal details of the arrested)

성 명(Name) :

생년월일(Date of Birth) :

여권번호(Passport No.) :

국적(Nationality) :

2. 체포 일시 및 장소 (Date & Place of arrest)

체포 일시 :

체포 장소 :

3. 사건개요(Details of the case)

4. 경찰 조치(Actions taken by the police)

사법경찰관(Officer in charge)

(OOOOO Police station)

전화(Telephone) :

팩스(Fax) :

제 호

수 신(To) :

제 목(Subject) : 영사기관 사망 통보(Death Notification)

1. 변사자(Personal Details of the deceased)

성 명(Name) :

생년월일(Date of Birth) :

여권번호(Passport No.) :

국적(Nationality) :

2. 발생 일시 및 장소(Date & Place of occurrence)

발생 일시 :

발생 장소 :

3. 발생 개요(Details of the incident)

4. 경찰 조치(Actions taken by the police)

사법경찰관 (Officer in charge)

제 호

수 신 : (행정협정 담당검사)

제 목 :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

아래와 같이 등의 범죄가 발생하였기에 통보합니다.

1. 관련자 인적사항

성 명 :

소 속 :

군 번 :

주민등록번호 :

사회보장번호 :

주 거 :

국 적 :

2. 신고자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거 :

3. 범죄사실

사법경찰관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97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몰수·부대보전 신청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몰수·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 금지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피의사실의요지		
몰수·부대보전의 근거법령 조항		
몰수보전관계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성명·주소	
	몰수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부대보전관계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	
	부대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사법경찰관		

제 호

수 신 :

제 목 : 추징보전 신청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추징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 금지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죄		명	
피의사실의 요지			
추징보전의 근거법령 조항			
추징보전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추징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사법경찰관

제 호		20 . . .
수 신 :		
제 목 : 추정정보전명령 취소신청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추정정보전명령의 (전부·일부)취소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추정보전사건의 표시		년 월 일 지방법원의 추정보전명령(년 제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취소 대상		☐ 전부취소 ☐ 일부취소
일부취소 시 범위		(기존 추정정보전액: 원) 취소신청 추정정보전액: 원 잔여 추정정보전액: 원
추정보전명령 취소를 필요로 하는 사유		
사법경찰관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제 호			
수 신 : 수신관서장			
제 목 : 사건이송			
다음 사건을 이송합니다.			
접 수 번 호		사 건 번 호	
죄 명			
피 (혐) 의 자			
사 건 개 요			
송부내역	서 류		
	증 거 품	품 명	수 량
이 송 사 유			
기타참고사항			
범 죄 통 계 원 표	발 생	검 거	피 의 자
사법경찰관			

제 호

수 신 : 귀하

제 목 : 수사결과 통지(고소인등·송치 등)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시	. . .	사 건 번 호	0000-000000
죄 명			
결 정 일			
결 정 종 류	1. 송 치 () : (☎:) 2. 이 송 () : (☎:) 3. 수사중지 ()		
주요내용			
담당팀장	○○과 ○○팀 경○ ○○○		☎ 02-0000-0000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 관할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아동보호 전문기관(1577-1391) 등
-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지역별 공단지부에 문의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민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수사 심의신청 제도(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
-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 제도
 - 수사중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
 -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신고 가능

제 호

수 신 : 귀하

제 목 : 수사결과 통지(피의자·송치 등)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시	. . .	사 건 번 호	0000-000000
죄 명			
결 정 일			
결 정 종 류	1. 송 치 () : (☎:) 2. 이 송 () : (☎:) 3. 수사중지 (참고인중지) ()		
주 요 내 용			
담당팀장	○○과 ○○팀 경○ ○○○		☎ 02-0000-0000

※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민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수사 심의신청 제도(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
-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 제도
 - 수사중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
 -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신고 가능

제 호

0000.00.00.

수 신 : 귀하

제 목 : 수사결과 통지(피의자·불송치)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시	. . .	사 건 번 호	0000-000000
죄 명			
결 정 일			
결 정 종 류	불송치 ()		
주 요 내 용			
담당팀장	○○과 ○○팀 경○ ○○○		☎ 02-0000-0000

※ 결정 종류 안내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결정 종류 안내>

-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민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수사 심의신청 제도(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

장

제 호

수 신 : 귀하

제 목 : 수사결과 통지(고소인등·불송치)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일 시	. . .	사 건 번 호	0000-000000
죄 명			
결 정 일			
결 정 종 류	불송치 ()		
이 유	별지와 같음		
담 당 팀 장	○○과 ○○팀 경○ ○○○	☎ 02-0000-0000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 관할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아동보호 전문기관(1577-1391) 등
-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지역별 공단지부에 문의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민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별지]

[결정종류]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 결정 종류 안내 및 이의·심의신청 방법

<결정 종류 안내>

-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이의·심의신청 방법>

- 위 결정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의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는 때 해당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됩니다.
- 수사 심의신청 제도(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

불송치 통지요구

신청인	성명	사건관련 신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요구 사유	
비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불송치 통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발행번호 제 호

불송치결정증명(고소인·고발인)

사 건 번 호		
신 청 인		
피 의 자		
죄 명		
결정	년 월 일	
	내 용	
수 사 관 서		
용 도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장

발행번호 제 호		
불송치결정증명(피의자)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죄 명		
결 정	년 월 일	
	내 용	
수 사 관 서		
용 도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장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사건번호 호, 호

제 목 수사중지결정

아래와 같이 수사중지 결정합니다.

I. 피의자

II. 죄명

III. 주문

IV. 피의사실과 수사중지 이유

사법경찰관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9호서식]

수 신 : *검찰청의 장*

제 목 : 수사중지 사건기록 송부

다음 수사중지 사건기록을 송부합니다.

사 건 번 호		결 정 일	
피 의 자	죄 명	주 문	
송 부 내 역	서 류		
	증 거 품		
공 소 시 효	장 기		
	단 기		
반 환 기 한			
참 고 사 항			

제 호

수 신 :

참 조 :

제 목 : 소재수사보고(소재확인종합)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재수사를 실시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소재 확인 대상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최종주거지 :

주 소 : 주소

등록기준지 : 등록기준지

배회처 : 1.

배회처 : 2.

1. 연고지 거주 여부(소재수사결과)

1) 최종주거지 :

2) 주 소 :

3) 등록기준지 :

4) 배회처 :

2. 가족, 형제자매, 동거인과의 연락 여부
3. 국외 출국 여부
4. 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감 여부
5. 경찰관서 유치장 수감 여부
6. 기타 참고사항(고의적인 출석불응 여부 등)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

☐ 신청인

성명		사건관련 신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경찰 결정 내용

사건번호	
죄명	
결정내용	수사중지 ()

☐ 이의제기 이유

신청인

(서명)

장귀하

제 호 0000.00.00.
수 신 : 귀하
제 목 : 수사중지사건 이의처리결과통지

귀하의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05조 제5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사 건 번 호	
처 리 결 과	
이 유	

소속상급경찰관서장

제 호

수 신 :

참 조 :

제 목 :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3항에 따라 다음 사건의 수사를 재개합니다.

1. 사건번호

2. 피의자 인적사항

：
：
：

3. 죄명

4. 수사중지 유형

5. 수사중지 해소의 구체적 사유

제 호

수 신 : **검찰청의 장**

제 목 : 피의자 등 소재발견 통보(수사중지 사건기록 반환 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제5항에 따라 피의자 등의 소재발견 및 수사재개 사실을 통보합니다.

소재발견 대상자	성 명	
	사건관련신분	
	주민등록번호	
	주 거	
	전 화	
대상 사건	사 건 번 호	
	송 부 일 자	
발 견 경 위		
비 고		
사법경찰관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15호서식]



사건번호 호, 호

제 목 송치결정

아래와 같이 송치 결정합니다.

I. 피의자 인적사항

:
:
:
:

II.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III. 범죄사실

IV. 적용법조

V. 증거관계

VI. 송치 결정 이유

사법경찰관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16호서식]

[illegible]

[illegible]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18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사건송치				
다음 사건을 송치합니다.				
피 의 자		지문원지 작성번호	구속영장 청구번호	피의자 원표번호
죄 명				
수사단서				
사건번호				
체포구속				
석 방				
결 정 일				
결정근거				
증 거 품				
비 고				

제 0000-000000 호

수 신 : 검찰청의 장

제 목 : 추가 송부

다음과 같이 추가 송부합니다.

피 의 자	
죄 명	
송 치(송 부) 일	
사 건 번 호	
결 정 일	
추가송부서류 및 증거품	
비 고	

제 0000-000000 호

수 신 : 검찰청의 장

제 목 : 보완수사결과통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완수사결과를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보완수사요구 내용		
보완수사요구 이행여부		☐ 이행 ☐ 불이행
이행 결과 (불이행시 사유 기재)		
사법경찰관		

제 호

수 신 :

제 목 :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통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합니다.

사건 번호			
대상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직무배제요구 요지			
처리 결과			
이유			
장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22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소년보호사건송치

다음과 같이 송치합니다.

비 행 소 년	성 명			이명(별명)			
	생 년 월 일				직 업		
	등록기준지						
	주 거						
	학 교			담 임			
	보 호 자	성 명			관 계		
		주민등록번호			연 령		
		주 거					
		전 화			핸드폰		
	비 행 사 건 명						
발 각 원 인							
동 행 여 부							
증 거 품							
비 고							
사법경찰관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23호서식]



사건번호 호, 호

제 목 불송치결정

아래와 같이 불송치 결정합니다.

I. 피의자

II. 죄명

III. 주문

IV. 피의사실과 불송치 이유

사법경찰관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24호서식]

수 신 : **검찰청의 장**

제 목 :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

다음 불송치 사건기록을 송부합니다.

사 건 번 호		결 정 일	
피 의 자	죄 명	주 문	
송 부 내 역	서 류		
	증 거 품		
공 소 시 효	장 기		
	단 기		
반 환 기 한			
참 고 사 항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25호서식]

제 호

수 신 : **검찰청의 장**

제 목 : 재수사결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수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재수사 요청 내용			
재수사 결과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 신청인

성명		사건관련 신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경찰 결정 내용

사건번호	-
죄명	
결정내용	

☐ 이의신청 이유

신청인

(서명)

장귀하

제 호

수 신 : 귀하

제 목 :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

귀하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건을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송치일시	. . .	송치번호	-	사건번호	-
조치사항					
담당팀장	☎ 02-0000-0000				

장

피 의 자 신 문 조 서(간이교통)

피 의 자 : ○○○○

위의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00:00 ○○○○○○○○○○
에서 사법경찰관 ○○ ○○○는(은) 사법경찰리 ○○ ○○○를(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

주민등록번호는 - (세)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주소는

연락처는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
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
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사 고 차 량 소 유 자 (소 속) 번 호 , 차 종	
면허종류 및 취득시기	
사 고 일 시	
사 고 장 소	
사 고 차 량 의 상 태 (고 장 유 무)	
사 고 경 위	

피의자가 잘못했다고 생 각 하 는 점	
피해자 및 피해상황	
사 고 후 의 조 치 (구 호 , 신 고)	
검증조서 또는 실황 조사서에 대한 의견	
피 해 증 거 (진 단 서 , 견적서)에 대한 의견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생 각 하 는 점	
합 의 여 부	
가 입 보 험 종 류	
그 밖에 유리한 자료	

피 의 자 신 문 조 서(간이폭력)

피 의 자 : ○○○

위의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00:00 ○○○○○○○○○○
에서 사법경찰관 ○○ ○○○는(은) 사법경찰리 ○○ ○○○를(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

주민등록번호는 - (세)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주소는

연락처는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
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
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범행일시	
범행장소	
공범 및 모의 경위	
피해자	
범행동기, 경위 및 수단·방법	

피해부위 및 정도	
진단서 등 증거에 대한 의견	
범행 후의 조치 (합의 여부 등)	
그 밖에 유리한 자료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피 의 자 신 문 조 서(간이절도)

피 의 자 : ○○○

위의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00:00 ○○○○○○○○○○
에서 사법경찰관 ○○ ○○○는(은) 사법경찰리 ○○ ○○○를(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

주민등록번호는 - (세)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주소는

연락처는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
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
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범행일시	
범행장소	
공범	
절취품	
피해자	
범행동기, 경위 및 수단·방법	

장 물 소 지 보 관 여 부	(압수절차)
장물처분경위 및 방법	
피 해 자 와 의 관 계	
검 거 된 경 위	
그 밖에 유리한 자료	

문 :

답 :

문 :

답 :

피 의 자 신 문 조 서(간이에비준)

피 의 자 : ○○○

위의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00:00 ○○○○○○○○○○
에서 사법경찰관 ○○ ○○○는(은) 사법경찰리 ○○ ○○○를(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

주민등록번호는 - (세)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주소는

연락처는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소 속 예 비 군 부 대		
역 종 · 계 급 · 직 책		
훈 련 불 참	일 시	
	장 소	
	훈 련 종 류	
소 집 통지서	피 의 자 에 게 전 달 된 과 정	
	발 행 부 대 장	
불 참 이 유		
증 거 (통 지 서 수 령 증) 에 대 한 의 견		
정 당 한 사 유 유 무 (보 류 , 연 기 원 서 제 출 등)		
그 밖 에 유 리 한 자 료		

문 :

답 :

문 :

답 :

피 의 자 신 문 조 서(간이도박)

피 의 자 : ○○○

위의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00:00 ○○○○○○○○○○
에서 사법경찰관 ○○ ○○○는(은) 사법경찰리 ○○ ○○○를(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

주민등록번호는 - (세)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주소는

연락처는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
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
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 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

◦

범행일시	
범행장소	
공범	
범행동기, 경위 및 수단·방법	

o

o

장 소 제 공 자 및 그 에 대 한 대 가	
승 패 역 수	
도박용으로 소지했던 금 품 및 물 건	(압수절차)
그 밖에 유리한 자료	

문 :

답 :

문 :

답 :

진 술 조 서(간이교통)

성 명	() 이명 :		성 별	
연 령	세 (. . . 생)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거				
자 택 전 화		직 장 전 화		
휴 대 전 화		전자우편(e-mail)		
직 업		직 장		
위의 사람은 피의자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의 피해자로서 . . . 00:00 ○○○○○○○○○○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피 해 일 시				
피 해 장 소				
가 해 차 량	(소유자)	(차량번호)	(차종)	
피 의 자				
피 해 경 위				

피 해 내 용	
제 출 할 증 거	
피 의 자 의 과 실 에 대 한 의 견	
진 술 인 의 과 실	
사 고 후 피 의 자 의 조 치	
피 의 자 와 합의 여부 (교 섭 상 황)	
피 의 자 의 처 별 에 대 한 의 견	
위의 진술내용을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답함.	

문 :

답 :

문 :

답 :

진 술 조 서(간이폭력)

성 명	() 이명 :		성 별	
연 령	세 (. . . 생)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거				
자 택 전 화		직 장 전 화		
휴 대 전 화		전자우편(e-mail)		
직 업		직 장		
위의 사람은 피의자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의 피해자로서 . . . 00:00 ○○○○○○○○○○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피 해 일 시				
피 해 장 소				
피 의 자				
피 해 경 위				

o

o

피 해 내 용 및 정 도	
피 해 후 의 조 치	
제 출 할 증 거	
압 수 증 거 물 확 인	
피 의 자 와 의 관 계	
합 의 여 부 또 는 교 섭 상 황	
피 의 자 의 처 벌 에 대 한 의 견	
위의 진술내용을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답함.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진 술 조 서(간이절도)

성 명	() 이명 :		성 별	
연 령	세 (. . . 생)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거				
자 택 전 화		직 장 전 화		
휴 대 전 화		전자우편(e-mail)		
직 업		직 장		
위의 사람은 피의자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의 피해자로서 . . . 00:00 ○○○○○○○○○○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도 난 일 시				
도 난 장 소				
도난품의 소유자, 점유자, 종류, 수 량 , 시 가				
도 난 경 위				

도 난 후 의 조 치	
제 출 할 증 거	
압 수 증 거 물 확 인	
도 난 품 의 회 수 , 가 격 변 상 여 부	
피 의 자 와 의 관 계	
피 의 자 의 처 벌 에 대 한 의 건	
위의 진술내용을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답함.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진 술 서(간이공통)

성명	() 이명 :		성별	
연령	만세(. . .생)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거				
자택전화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e-mail)		
직업		직장		
위의 사람은 ○○○○○○○○○○○ 사건 (피의자,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진술서(간이교통)

성명	() 이명 :		성별	
연령	만세 (. . . 생)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거				
자택전화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e-mail)		
직업		직장		
위의 사람은 아래와 같이 교통사고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 이에 관하여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피해일시				
피해장소				
가해차량	(소유자)	(차량번호)	(차종)	
피의자				
피해경위				

피 해 내 용	
제 출 할 증 거	
증거물 확인	
피 의 자 의 과 실 에 대 한 의 견	
진 술 인 의 과 실	
사 고 후 피 의 자 의 조 처	
합 의 여 부 또 는 교 섭 상 황	
피 의 자 의 처 벌 에 대 한 의 견	
그 밖 에 참 고 될 진 술	
. . . 작성자 (인)	

진술서(간이폭력)

성명	() 이명 :		성별	
연령	만세 (. . 생)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거				
자택전화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e-mail)		
직업		직장		
위의 사람은 아래와 같이 상해(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이에 관하여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피해일시				
피해장소				
피의자				
피해경위				

피 해 내 용	
피 해 후 의 조 치	
제 출 할 증 거 물 또 는 증 인	
압 수 증 거 물 확 인	
피 의 자 와 의 관 계	
합 의 여 부	
피 의 자 의 처 벌 에 대 한 의 견	
그 밖에 참고될 진술	
· · · 작성자 (인)	

진 술 서(간이절도)

성 명	() 이 명 :		성 별	
연 령	만 세 (. . . 생)	주민등록번호		
등 록 기 준 지				
주 거				
자 택 전 화		직 장 전 화		
휴 대 전 화		전자우편(e-mail)		
직 업		직 장		
위의 사람은 아래와 같이 도난당한 사실이 있어 이에 관하여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도 난 일 시				
도 난 장 소				
피 의 자				
도난품의 소유자, 점유자, 종류, 수 량 , 시 가				
피 해 경 위				

도 난 후 의 조 치	
제 출 할 증 거	
압 수 증 거 물 확 인	
도 난 품 의 회 수 , 가 격 변 상 여 부	
피 의 자 와 의 관 계	
피 의 자 의 처 별 에 대 한 의 건	
그 밖 에 참 고 될 진 술	
· · · 작성자 (인)	



수 신 : **검찰청의 장**

발 신 : **소속관서**

제 목 : 송치결정(간이)

사법경찰관

사 건 번 호	호, 호
피 의 자	: : : :
죄 명	
범 죄 사 실	
적 용 법 조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송치 결정 이유	